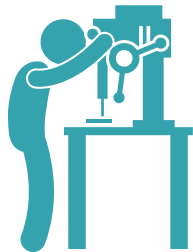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2.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 확보
3.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
4. 전기작업시 접지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5. 기계·설비 정비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정비안내 표지판을 부착
6.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 표지 부착
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
8.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간판, 개구부 덮개 등 설치
9. 금속의 용접·용단 등의 작업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
10.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전·작업 중 산소농도·유해가스 등을 측정하고 환기 실시



기관 안내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고용노동부 본부 | 044.202.7738 | 경기지청 | 031.259.0211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02.2231.0009 | 평택지청 | 031.617.9010 |
| 서울강남지청 | 02.584.0009 | 부천시청 | 032.714.8700 |
| 서울동부지청 | 02.403.0009 | 안양지청 | 031.463.7300 |
| 서울서부지청 | 02.2077.6112 | 안산지청 | 031.486.0009 |
| 서울남부지청 | 02.2639.2110 | 성남지청 | 031.788.1505 |
| 서울북부지청 | 02.950.9711 | 의정부지청 | 031.850.7713 |
| 서울관악지청 | 02.3281.3282 | 고양지청 | 031.931.2800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50.6310 | 강원지청 | 033.258.3562 |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00 | 강릉지청 | 033.650.2500 |
| 부산북부지청 | 051.309.1575 | 원주지청 | 033.769.0832 |
| 창원지청 | 055.239.6520 | 태백지청 | 033.552.8601 |
| 울산지청 | 052.228.3812 | 영월출장소 | 033.371.6220 |
| 양산지청 | 055.387.080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062.975.6200 |
| 진주지청 | 055.752.5701 | 전주지청 | 063.240.3400 |
| 통영지청 | 055.645.0009 | 익산지청 | 063.839.0009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053.667.6310 | 군산지청 | 063.450.0510 |
| 대구서부지청 | 053.605.9000 | 목포지청 | 061.280.0100 |
| 포항지청 | 054.284.7991 | 여수지청 | 061.6500.109 |
| 구미지청 | 054.450.3500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042.480.6212 |
| 영주지청 | 054.639.1111 | 청주지청 | 043.299.1114 |
| 안동지청 | 054.851.8012 | 천안지청 | 041.560.2800 |
| 충북지방고용노동청 | 032.460.4500 | 충주지청 | 043.845.7760 |
| 인천북부지청 | 032.540.7920 | 보령지청 | 041.931.6640 |

안전보건공단

|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공단 본부 | 052.703.0697 | 충북지역본부 | 032.510.0587 |
| 서울지역본부 | 02.6711.2916 | 경기지사 | 031.259.7178 |
| 서울북부지사 | 02.3783.8350 | 경기북부지사 | 031.828.1943 |
| 강원지사 | 033.815.1058 | 경기서부지사 | 031.481.7555 |
| 강원동부지사 | 033.820.2552 | 경기동부지사 | 031.785.3375 |
| 부산지역본부 | 051.520.0547 | 부천시 | 032.680.6571 |
| 울산지사 | 052.226.0510 | 대구지역본부 | 053.609.0570 |
| 경남지사 | 055.269.0516 | 대구서부지사 | 053.650.6813 |
| 경남동부지사 | 055.371.7500 | 경북동부지사 | 054.271.2012 |
| 광주지역본부 | 062.949.8713 | 경북지사 | 054.478.8063 |
| 전북지사 | 063.240.8524 | 대전지역본부 | 042.620.5678 |
| 전북서부지사 | 063.460.3616 | 충북지사 | 043.230.7113 |
| 전남동부지사 | 061.689.4914 | 충남지사 | 041.570.3400 |
| 전남지사 | 061.288.8713 | | |
| 제주지사 | 064.797.7524 | |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안전보건기준을 지키고
예방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 #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알 권리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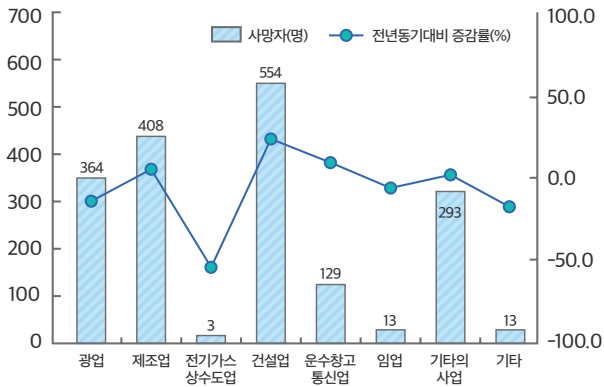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에서 하루 평균 재해자는 약 250명, 사망자는 약 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종별 사망재해자 수 (전체 1,777명)]

근로자의 권리

🚫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및 대피 [제26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제41조]

근로자 대표 등은 직업병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취급하는 화학 물질의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42조]

근로자 대표 등은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안전보건활동 참여권 (근로자, 근로자 단체 또는 노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에 참여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동의
-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시 협의
-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시 입회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의견제시

☎️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권리 [제52조]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안전·보건교육 이수 [제31조, 31조의2, 제41조]

근로자는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작업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

※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조

🧯 지급하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함

🏠 건강진단 이행 [제43조③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